

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남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0747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2. 11.
발의자 : 박남춘 · 김현권 · 조승래
김영호 · 박찬대 · 김정우
표창원 · 윤관석 · 유은혜
남인순 · 전해철 · 김종훈
최인호 · 설훈 · 이재정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범죄피해자 보호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·신체 등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 할 수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국가경찰의 임무 중 하나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하여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, 경찰이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따른 국가경찰의 임무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의 중요성 및 해당 임무 수행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2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범죄피해자 보호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국가경찰의 임무) 국가경찰 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· 2. (생 략) <u><신 설></u> 3. ~ 7. (생 략)	제3조(국가경찰의 임무)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<u>2의2. 범죄피해자 보호</u> 3. ~ 7. (현행과 같음)